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67
----------	-------

발의연월일 : 2026. 1. 20.

발 의 자 : 김승원 · 민병덕 · 김남근
김종민 · 강준현 · 이주희
이정문 · 임호선 · 허영
복기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최대주주의 법령위반 등으로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인 최대주주가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은행법, 저축은행법과 달리 의결권 제한명령을 위반한 최대주주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 제39조 및 제42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적격성 심사대상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최대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이 보유한 해당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말한다) 중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 중 “제31조제3항”을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2조제6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처분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① ~ ⑤ (생 략) <u><신 설></u>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적격성 심사대상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최대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이 보유한 해당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말한다) 중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u>
<u>⑥ · ⑦</u> (생 략)	<u>⑦ · ⑧</u>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39조(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u>제31조제3항</u> 에 따른 주식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	제39조(이행강제금) ① ----- --- <u>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6항</u> ----- ----- ----- ----- ----- -----

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①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제32조제6항에 따른 주식처 분명령을 위반한 자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